

2023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침체 및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강원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의 고용유지에 성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4. 13

(재)강원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  
나. 지원규모 : 3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다. 지원대상 : '23. 3 1 ~ '23. 12. 31 이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 기업 사업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대상자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라.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 장려금(인센티브)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4. 13 ~ 2023. 12. 31(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2

## 신청자격

- (대상) '23. 3. 1 ~ '23. 12. 31 이내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 분야\*  
에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  
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대상자(사업주)

## \*관광·서비스업 분야 지원업종 기준

①관광 수상운송업 ②관광 항공운송업 ③호텔업 ④휴양콘도미니엄업 ⑤여행업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⑧유원시설업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⑩관광 식당업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관광산업 특수분류 ■

| 중분류                     | 세분류   |
|-------------------------|---|
| ①관광 수상운송업               | 내항여객 운송업(50121),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
| ②관광 항공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
| ③호텔업                    | 호텔업(55101)  |
| ④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 콘도 운영업(55103)  |
| ⑤여행업                    | 여행사업(75210)   |
|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90221),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2)   |
|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
| ⑧유원시설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
|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91113), 골프장 운영업(91121), 스키장 운영업(91122), 낚시장 운영업(91231),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91139),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91239) |
| ⑩관광 식당업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
|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56229)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명
- 지원기간 : '23. 3. 1 ~ '23. 12. 31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까지)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3. 12. 31
- 지원기간 : '23. 3. 1 ~ '23. 12. 31(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신청 확인 必)  
⇒양식 다운로드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wep.or.kr)  
⇒제출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1-8024([hamsh@gwep.or.kr](mailto:hamsh@gwep.or.kr)) 함승현 팀장
- 신청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1  | [서식1]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 2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
| 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 4  | [서식4] 사업주 확인서(인센티브 장려금 신청시)                   |

- 첨부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지원기관-수혜기업 간 지원 협약서 사본 1부, 기업명의 통장 사본, 5인 이상 기업 확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 재직증명서 등

## 5

### 기업 필수 자격조건

- **(필수1)**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입자로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 기업의 사업주
- **(필수2)** '23. 3.1 ~ 12. 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후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의 사업주  
⇒ 고용센터, 희망리본 등 지원기관이 발급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제출

## 6

### 지원 대상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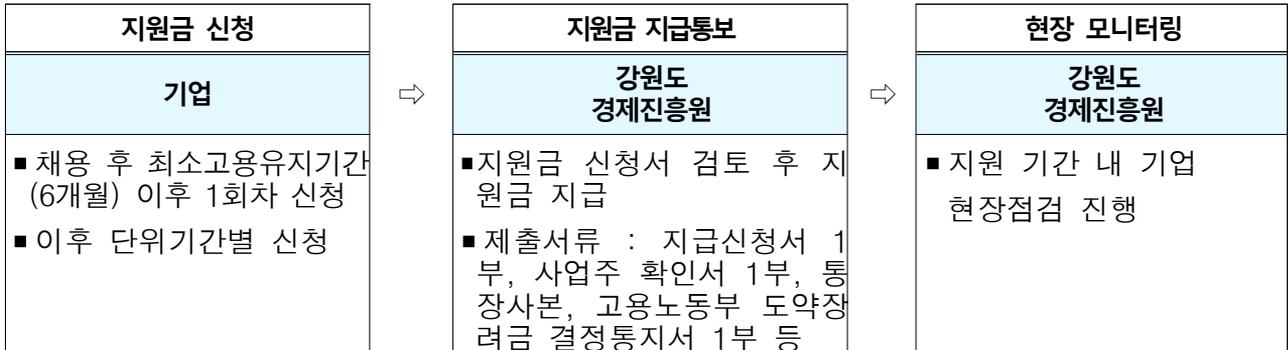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23년 3월 1일 기준 1988. 3. 2 ~ 2008. 3. 1 출생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② 고졸 이하 학력
  -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
  - ⑦ 북한이탈청년
  -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 ⑨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 근로조건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② 고용보험 가입
  - ③ 소정근로 주 30시간 이상
  - ④ 2023년도 최저임금법 기준 최저임금 100%이상

## 7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① **(지원금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 제외
- ② **(고용조정이직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③ **(고용조정제한대상)**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④ **(고용조정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⑤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⑥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위반시 사업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9

### 제재사항

-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의 정정 및 제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 기업의 적격여부 착오·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원금 신청을 정정 할 수 있음

## 10

### 관련문의

- 문의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1-8024([hamsh@gwep.or.kr](mailto:hamsh@gwep.or.kr)) 함승현 팀장  
033-262-8029([hj33@gwep.or.kr](mailto:hj33@gwep.or.kr)) 심현지 전문관

## 붙임: 서식 목록

### <참여기업>

【서식 1】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4】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서식 5】 고용노동부 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 결정통지서

■ [서식 1]

##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기관 - 20 - 0000 | 접수일자 |
|------|------------------|------|

|                     |     |                 |  |
|---------------------|-----|-----------------|--|
| 사업장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고용보험<br>사업장관리번호 |  |
| 소재지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      |                         |             |
|--------------------|-----------------|------|-------------------------|-------------|
| 성명<br>(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br>(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br>(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br>(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           |                       |
|-----------|-----------------------|
| 기업명의 계좌번호 | ( ) 은행 _____ (예금주 : ) |
|-----------|-----------------------|

|             |                            |                              |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업주 확인서<br>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br>3. 5인이상기업 관련 증빙서류(취득자 목록 등)<br>4. 도약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1부 | 5. 지원기관-수혜기업 지원 협약서 사본 1부<br>6. 해당자 재직 증명서 각 1부<br>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br>참여 적격요건 확인,<br>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br>부정수급 점검 등<br>고용보험 이력조회<br>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br>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br>지원 종료<br>시점으로부터<br>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br>계속 관리   |

2.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4]

## 사업주 확인서 (인센티브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             |
|---|-------------|
|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고, 관광·서비스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신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일이 속한 월에는 신청 불가)                  | [ ]예 [ ]아니오 |
|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예 [ ]아니오 |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 ]예 [ ]아니오 |
| ⑤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감원한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⑥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 ]예 [ ]아니오 |
|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br>(*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             |
| ① 채용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만 15세~34세 이하)<br>* '23년 3월 1일 기준 1988. 3. 2 ~ 2008. 3. 1 출생자                                    | [ ]예 [ ]아니오 |
|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br>*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 ]예 [ ]아니오 |
|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 ]예 [ ]아니오 |
|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br>*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예 [ ]아니오 |
| ⑦ 동일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지 않음.  | [ ]예 [ ]아니오 |
| ⑧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br>* 단, 대학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① 사업주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시 사업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 확인      |
|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5]

##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 (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 사업장 현황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주소    |    | 대표자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2. 신청 내용 |      |                      |      |
|----------|------|----------------------|------|
| 이름       | 생년월일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3. 지원 결정 내용 |      |                      |      |
|-------------|------|----------------------|------|
| 이름          | 생년월일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      | . . . 부터<br>. . . 까지 | 원    |

|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  |  |
|-----------------|--|--|--|
|                 |  |  |  |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를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강원도경제진흥원장

(인)